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안)

제정 2019. 1. 31.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9-2호

개정 2020. 00. 00.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내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의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능력 현장평가”란 국외 검사기관 인정 시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준시료를 사용한 검사능력의 측정 및 평가를 말한다.

제3조(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신청기관의 정부를 경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
2. 검사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실적, 검사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3. 주요 시험장비 현황(별표 1, 단, 시험장비의 소유자가 신청기관이 아닌 경우 장비 임대 계약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4. 시설현황(별표 2)
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기간 포함)
6. 해당 신청기관의 정부가 검사능력을 평가하거나,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 증빙서류 사본
7. 검사 업무규정 및 관련서식(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제4조(국외 검사기관 지정 심사 및 절차)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목재제품의 품질검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지명하여 2인 이상 심사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단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별표4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서류심사 항목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기관에 대해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와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3의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심사 결과 제3조제6호에 따라 신청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증빙서류가 있고 검사시설 및 검사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사단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검사능력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때는 현장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국외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신청기관이 별표 4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현장조사 항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주소

3. 대표자

4. 검사품목

⑦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국외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와 개선 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선·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개선기한까지 신청기관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5조(국외 검사기관 관리 등)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이 별표 4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정한 국외 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의 검사 관련 시설과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및 검사의 적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1.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목재제품 품목별 주요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제3조 관련)

대상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최소 수량	비 고
제재목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1	최소눈금(e또는d) 0.01 g 이하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3±2℃
	데시케이터	5	
	강도등급기	1	등급구분기계 또는 만능재료시험기(10t)
	광학현미경	1	배율 x40~x400
	슬라이딩마이크로톱	1	
	고압연화기	1	
방부목재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최소눈금(e 또는 d) 0.0001 g 이하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3±2℃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AAS) 또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ICP)	1	BB, ACQ, CUAZ, CuHDO, MCQ, NCU, NZN 금속 분석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1	DDAC와 ACQ 및 MCQ의 유기화합물 분석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또는 Gas Chromatography(GC)	3	CUAZ의 유기화합물, IPBC, IPBCP 분석(3개 별도 장비 필요)
	Ultraviolet - visible Spectrophotometer(UV-VIS)	1	CuHDO의 유기화합물 분석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LC-MS)	1	ACQ, AAC 방부제 유기물분석	

대상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최소 수량	비 고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GC-MS) 또는 Liquid Chromatography(LC)	1	CUAZ, CuHDO 방부제 유기물 분석
	목재보존제용 비중계	1	
난연목재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3±2℃
	항온항습챔버	2	일정 조건 하에서 지정 온·습도를 유지 가능하여야 함
	저울	1	최소눈금(e 또는 d) 0.001 g 이하
	데시케이터	3	
	콘칼로리미터	1	KS F ISO 5660-1
	가열기	1	
	가스유해성시험장치	1	KS F 2271
	버니어캘리퍼스	1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항온항습챔버	2	일정 조건 하에서 지정 온·습도를 유지 가능하여야 함
	증류수(또는 초순수) 제조장비	1	
	만능재료시험기	1	20 t 이상
	굴곡크리프시험기	1	KS M ISO 899-2
	낙하시험충격기	1	KS F 2221
	초저온냉동고	1	사용온도 -30±2℃
	충격강도시험기	1	KS M ISO 179-1
	미끄럼저항시험기	1	KS M 3510
	항온수조	1	사용온도 최고 100℃
	길이선열팽창계수시험기	1	KS M ISO 11359-2
	내후성시험기	1	KS M 4892-2
	Inductively Coupled Plasma	1	

대상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최소 수량	비 고
	Spectroscopy(ICP)		
	데시케이터	10	
	진탕기	1	
	비중시험기	1	KS M 3016
	Ultraviolet - visible spectrophotometer(UV-VIS)	1	
	저울	1	최소눈금(e 또는 d) 0.001 g 이하
	버니어캘리퍼스	1	
	방염성시험기 맥켈버너형	1	KS F 2819
집성재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1	최소눈금(e또는d) 0.01 g 이하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3±2℃
	항온수조	1	사용환경 20~100℃
	만능재료시험기	1	10 t 이상
	데시케이터	10	
	Ultraviolet - visible Spectrophotometer(UV-VIS)	1	
	증류수(또는 초순수) 제조장비	1	
	항온항습챔버	2	일정 조건 하에서 지정 온·습도를 유지 가능하여야 함
	광학현미경	1	배율 x40~x400
	슬라이딩 마이크로톰	1	
합판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1	최소눈금(e또는d) 0.01 g 이하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3±2℃

대상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최소 수량	비 고
	항온수조	1	사용환경 20~100℃
	힘강성 변형량 측정대	1	
	만능재료시험기	1	1 t 이상
	데시케이터	10	
	Ultraviolet - visible Spectrophotometer(UV-VIS)	1	
	증류수(또는 초순수) 제조장비	1	
	항온항습챔버	2	일정 조건 하에서 지정 온·습도를 유지 가능하여야 함
파티클보드 /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1	최소눈금(e또는d) 0.01 g 이하
	만능재료시험기	1	1 t 이상
	데시케이터	10	
	Ultraviolet - visible Spectrophotometer(UV-VIS)	1	
	항온항습챔버	2	일정 조건 하에서 지정 온·습도를 유지 가능하여야 함
	실험용 건조기	1	사용환경 103±2℃
	증류수(또는 초순수) 제조장비	1	
	항온수조	1	사용환경 20~100℃
목질바닥재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1	최소눈금(e또는d) 0.01 g 이하
	만능재료시험기	1	1 t 이상
	데시케이터	10	
	Ultraviolet - visible Spectrophotometer(UV-VIS)	1	

대상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최소 수량	비 고
	항온항습챔버	2	일정 조건 하에서 지정 온·습도를 유지 가능하여야 함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3±2℃
	증류수(또는 초순수) 제조장비	1	
	항온수조	1	사용온도 20~100℃
	마모시험기	1	
	경도시험기	1	
	부착력 시험기	1	
	변퇴색 시험기	1	
	깊이 측정기(depth gauge)	1	최소눈금 0.01 mm 이하
목재펠릿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1	정확도 ±25 g
	저울	1	최소눈금(e 또는 d) 0.0001 g 이하
	겉보기밀도 측정용기	1	ISO 17828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5±2℃
	데시케이터	1	
	회화로	1	사용온도 1,000 ℃
	분쇄기	1	시료제조용
	체	1	직경 3.15 mm, ISO 18846
	내구성시험기	1	ISO 17831-1
	열량계	1	
	원소분석기	1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AAS) 또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ICP)	1	BB, ACQ, CUAZ, CuHDO, MCQ, NCU, NZN 금속 분석
	Ion Chromatography(IC)	1	
	시료분급장치	1	2개 이상 분주 가능
	전처리 장비	1	시료 전처리용, ISO 16968
	회분 용점 측정기	1	CEN/TS 15370-1

대상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최소 수량	비 고
목재칩	목재칩 시료채취도구	1	ISO 18135
	진동체 선별기 또는 로타리 스크린	1	ISO 17827-1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5±2℃
	분쇄기	1	시료 제조
	저울	1	정확도 ±25 g
	저울	1	최소눈금(e 또는 d) 0.0001 g 이하
	겉보기밀도 측정용기	1	ISO 17828
	데시케이터	1	
	회화로	1	사용온도 1,000℃
	열량계	1	
	원소분석기	1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AAS) 또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ICP)	1	BB, ACQ, CUAZ, CuHDO, MCQ, NCU, NZN 금속 분석
	Ion Chromatography(IC)	1	
	시료분급장치	1	2개 이상 분주 가능
	전처리 장비	1	시료 전처리를, ISO 16968
목재브리켓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1	정확도 ±25 g
	저울	1	최소눈금(e 또는 d) 0.0001 g 이하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5±2℃
	데시케이터	1	
	회화로	1	사용온도 1,000℃
	분쇄기	1	시료제조용
	체	1	직경 3.15 mm, ISO 18846
	밀도측정장치	1	EN 15150 참고
	열량계	1	

대상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최소 수량	비 고
	원소분석기	1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AAS) 또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ICP)	1	BB, ACQ, CUAZ, CuHDO, MCQ, NCU, NZN 금속 분석
	Ion Chromatography(IC)	1	
	시료분급장치	1	2개 이상 분주 가능
	전처리 장비	1	시료 전처리용, ISO 16968
성형숯	버니어캘리퍼스	1	
	저울	1	정확도 ± 25 g
	저울	1	최소눈금(e 또는 d) 0.0001 g 이하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5 \pm 3^{\circ}\text{C}$
	데시케이터	1	
	회화로	1	
	분쇄기	1	시료제조용
	체	1	직경 3.15 mm, ISO 18846
	열량계	1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ICP)	1	
	화덕	1	
	시료분급장치	1	2개 이상 분주 가능
	전처리 장비	1	시료 전처리용, ISO 16968
숯	체	1	직경 30 mm
	저울	1	최소눈금(e 또는 d) 0.0001 g 이하
	실험용 건조기	1	사용온도 $105 \pm 3^{\circ}\text{C}$
	데시케이터	1	
	회화로	1	사용온도 $1,000^{\circ}\text{C}$
	열량계	1	

대상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최소 수량	비 고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AAS) 또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ICP)	1	BB, ACQ, CUAZ, CuHDO, MCQ, NCU, NZN 금속 분석
	분쇄기	1	시료제조용
	시료분급장치	1	2개 이상 분주 가능
	전처리 장비	1	시료 전처리용, ISO 16968

※ 검사기관은 반드시 장비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장비를 빌리거나(borrowed), 대여하거나(rented), 임차하거나(hired) 또 다른 당사자(장비의 제조자 또는 설치자)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검사기관의 책임이다.

[별표 2]

검사실 표준 환경조건 및 기준(제3조 관련)

분 류	표준 환경조건 및 기준		비 고
물리시험 검사실	환경조건	20±2℃, 66±5% R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F 2201(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에 따른 표준 상태 환경조건 기준 · 폐기물 별도 보관·처리 · 실대재시험 등 일부품목 별도장소에서 실시가능 · 천칭실 별도구획 분리
	검사실 필수설비 및 장비	항온항습설비, 환기시설, (별표 1)의 품목별 품질시 험기 및 분석장비	
화학시험 검사실	환경조건	20±2℃, 66±5% R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F 2201(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에 따른 표준 상태 환경조건 기준 ·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폼알데하이드방출량 분석실 분리 · 폐기물 별도 보관·처리
	검사실 필수설비 및 장비	항온항습설비, 흡후드, 화 재안전시설, 환기시설, (별표 1)의 품목별 품질시 험기 및 분석장비	

* 비고 : 검사실의 표준 환경조건 및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목재제품의 특성, 현장여건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평가단이 평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수 부여

[별표 3]

국의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현장조사 평가표(제4조 관련)

현장조사 점검사항	배점	점수	비고
총 점	100		
I. 설비 및 인력 등 일반현황	50		
1.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25		
가. 검사실, 장비 등 기타 설비 등의 배치도 보유 여부	(5)		
나. 검사실의 유무 및 적합성	적/부		필수
다. 시설에 관한 사항(별표 2의 검사실 조건 및 기준에 따름) - 환기, 배수 및 폐수 등 시설의 적정성 여부 - 검사실 환경 관리의 적정성 여부 - 검사실 출입 및 그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	(5)		
라. 시료 보관에 관한 사항 - 적절한 보관 조건 유지 및 관리 여부 - 시료 접수 및 폐기 절차의 적정성 및 관리 여부 - 부적합 시료 보관의 적절성 여부(별도 장소 지정 여부 포함)	(5)		
마. 검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검사실 시험에 사용된 폐기물의 분리배출 준수 여부 - 측정 장비에 연결된 가스용기의 안전 관리 여부 - 검사 인력 보호 장구의 구비 여부 등	(10)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10		
가.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장비의 현황 및 보유 여부 (품목별 필요 장비는 별표 1에 따름)	적/ 부		필수
나. 장비의 유지 및 관리 현황 - 시험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보유 여부 - 유지 및 관리 절차의 적절성 여부 - 해당 시험장비의 검/교정 준수 여부	(10)		
3. 규격·품질검사업무 수행 인력에 관한 사항	15		
가. 검사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의 보유 여부	적/ 부		필수
나. 검사업무 수행 인력의 관리 여부 - 전담 조직 구성 여부 - 수행 인력의 관리 여부(조직도 및 업무 분장 등)	(5)		

현장조사 점검사항	배점	점수	비고
다. 검사업무 수행 인력의 교육 등 인력관리 사항 - 업무 분장에 따른 검사 인력의 검사업무 참여 여부 - 검사 인력의 적절한 검사능력 보유를 위한 인력 관리 여부 (자격증, 교육훈련 및 경력사항, 교육계획서, 교육관련 자료 등)	(10)		
Ⅱ. 규격·품질검사 업무규정 등의 검사업무의 관리	50		
1. 규격·품질검사 업무규정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40		
가.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외 검사기관 업무규정의 보유 여부 -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보유 여부 (품목별 필요 장비 보유 현황 및 관리 사항, 품목별 품질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결과, 검사인력 현황 등의 사항)	(20)		
나. 규격·품질검사 인력에 관한 사항 - 업무 규정 내에 검사 인력의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명문화 여부 - 관련 준수사항의 교육 여부	(10)		
다.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적절한 유지 여부 - 문서 보유 여부 (품목별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험결과, 시험일지 등) - 검사결과 통지서의 작성 및 보관 여부	(5)		
라. 검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2.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0		
가. 분석항목별 표준작업지침서의 구비 및 내용의 적절성 여부	(5)		
나. 분석장비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의 구비 및 내용의 적절성 여부 - 장비관련 대장의 구비 및 작성 등 관리여부 - 표준품 인수·보관·처리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및 관리여부	(5)		

【별표 4】

국의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적합 평가기준(제4조 관련)

구분	적합 기준	비고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장비 현황 : 별표 1과 별표 2 충족 - 검사 인력 :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1의7 관련) - 검사 업무규정 및 관련서식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검사방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검사결과 통지 내용 등을 충족 	
현장조사	별표 3의 필수항목 모두 적합 및 배점항목 총점 70점 이상	
	검사능력 현장평가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검사방법 충족	필요시 진행

* 진행된 심사 항목이 모두 적합 기준을 충족시 검사기관 지정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전화번호(e-mail)																
기관명칭			FAX																
주소																			
검사범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1. 제재목 []</td> <td style="width: 50%;">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td> </tr> <tr> <td>2. 방부목재 []</td> <td>10. 목질바닥재 []</td> </tr> <tr> <td>3. 난연목재 []</td> <td>11. 목재펠릿 []</td> </tr> <tr> <td>4. 목재 플라스틱복합재 []</td> <td>12. 목재칩 []</td> </tr> <tr> <td>5. 집성재 []</td> <td>13. 목재브리켓 []</td> </tr> <tr> <td>6. 합판 []</td> <td>14. 성형숯 []</td> </tr> <tr> <td>7. 파티클보드 []</td> <td>15. 숯 []</td> </tr> <tr> <td>8. 섬유판 []</td> <td></td> </tr> </table>			1. 제재목 []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	2. 방부목재 []	10. 목질바닥재 []	3. 난연목재 []	11. 목재펠릿 []	4. 목재 플라스틱복합재 []	12. 목재칩 []	5. 집성재 []	13. 목재브리켓 []	6. 합판 []	14. 성형숯 []	7. 파티클보드 []	15. 숯 []	8. 섬유판 []	
1. 제재목 []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																		
2. 방부목재 []	10. 목질바닥재 []																		
3. 난연목재 []	11. 목재펠릿 []																		
4. 목재 플라스틱복합재 []	12. 목재칩 []																		
5. 집성재 []	13. 목재브리켓 []																		
6. 합판 []	14. 성형숯 []																		
7. 파티클보드 []	15. 숯 []																		
8. 섬유판 []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3조에 따라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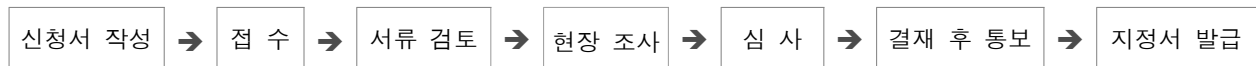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 2. 검사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 실적) 3. 주요 시험장비 현황(영문명, 규격, 수량, 장비계약서류 등) 4. 시설현황(시설계약서류 등) 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기간 포함) 6. 정부 또는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서 검사능력을 인증(평가)받은 서류 7. 검사 업무규정 및 관련서식(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처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관계부서

제 호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주소 :
4. 검사품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직인